

제305회 정례회
2011. 12. 19(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나시찬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 현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12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자전거 이용시설 등의 정의 (안 제2조)
- 나. 도지사, 도민의 책무 등 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(안 제6조)
- 라. 전담부서, 자전거도로의 설치 (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)
- 마.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(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)
- 바.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(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 등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,

- 전 세계적 트렌드인 '저탄소 녹색성장'의 효율적 추진방안으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업무관련부서인 균형건설국 도로과와 충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(2011.11.10 ~ 11.29)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,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 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선택하였으며,
- 조문의 표현은 중복되지 않고 간결하게 경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조문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규정하였으며,

- 도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건강한 충북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